

OO고등학교 급식용 식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

제1조(적용) 이 조건은 OO고등학교가 행하는 급식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수요기관"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.
- ② "검수"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 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납품 및 검수) ① 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 담당 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구매 요구서에 의거 **08:40에 수요기관의 급식소에 납품**하여야 한다.

- ② "검수"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 지시하였을 경우 **10:00 까지 재납품**하여야 한다.

제4조(식품 등의 취급)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

- ② 품질의 평가 즉, 검수 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농·수·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.
- ④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,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(위생복, 위생장화, 위생모착용)

제5조(계약의 해지)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요기관(업무담당자 및 관계자)이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.

- ①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
- ② **물품이 현품 설명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**
- ③ 규격(품질, 양)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
- ④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
- 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
- ⑥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
- ⑦ 냉장·냉동 탐차 가동하여 운송하며 온도기록지 제출, 위생복 착용
- ⑧ 1차 물품에 있어서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
- ⑨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
제6조(입찰참가의 제한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(수의계약 시 당일 포함) 월 3회 이상인 경우에는 OO고등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계약 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.

- ②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, ①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.

제7조(변경계약) 계약서상의 물품수량은 급식인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의 물품수량이므로 수요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물량을 가감할 수 있으며, 추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는 계약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품목별 단가에 준하며, 추가품목에 대해서는 가장최근의 시장 물가조사서에 준한다.

제8조(급식일정의 변경 및 취소)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.

제9조(급식품의 품질 및 감액조치) ① 급식품의 품질은 현품 설명서의 품목별 물품규격에 의한다.

- ② 납품한 급식품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%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기타) ①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 을이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.

② 전처리된 야채(씻은 당근, 깐생강, 깐마늘 등)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10°C 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.

③ 냉동식품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도록 한다.

④ 냉장식품은 10°C이하로 입고시키도록 한다.

⑤ 포장지로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, 박스 무게를 제외한 양을 입고량으로 간주한다.

⑥ 유전자검사 관련 제반 수수료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.

⑦ 외부에 얼음이나 물을 넣어 운반하는 제품의 경우, 1차적으로 제품을 포장하고 그 외부에 물이나 얼음을 포장하여 운반토록 한다.

⑧ 냉동탑차의 경우 반드시 당일 물품을 납품한 후 차량내부를 세척, 소독하도록 한다.

⑨ 물품납품시 탑차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여, 검수 시작과 동시에 영양사가 내부온도 10°C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⑩ 납품자는 영양사가 검수를 시작하기 전에 탑차문을 열지 않도록 하며, 납품 시 반드시 물품을 검수대에 올려서 바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
⑪ 규격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모두 국산으로 하되 최상품으로 입고한다.

⑫ 모든 축산품에는 축산물품질관리법 제3장 제15조1항~3항에 의거하여 원산지표기를 하도록 한다.